안건5-가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

1 추진배경

□ 최근 **현역병**이 **고금리 대부업***을 이용하거나, **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**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
*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 기준 현역병 대출 취급액 : '22년말 3.5억원 → '25년말 242억원

○ **온라인 도박** 또는 **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** 과정에서의 **무분별**한 **자금 운용**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

➡ **현역병**들이 **군복무**에 **충실**하고 **전역 후**에도 **건전한 금융생활**을 이어갈 수 있도록 **금융안정 대책**을 수립할 필요

2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현황

□ 대부분의 **금융권**에서 차주의 **소득증빙**을 필요로 하지 않는 **담보대출**이나 **비상금 대출**(긴급자금대출)의 경우 **현역병** 상대로 **취급 가능**

○ 다만, 동 대출 취급시 **차주 신분**이 **현역 병사**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**관련 대출**의 **현역병 대상 취급 규모**를 파악하기는 어려움*

* 가입 대상이 현역병으로 한정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'25년말 현재 13개 은행의 취급잔액이 591억원 (장병내일준비적금 잔액은 2조 1,055억원)

□ **일반 신용대출**은 상환능력 심사과정에서 **소득금액증명원** 등 **소득증빙**이 필요하므로 **현역병** 상대로 **취급**하지 **않는 것**이 일반적

○ 다만, **일부 대부업자**는 **대부업법령**상 **소득증명서류***에 **'급여통장 사본'**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**현역병**의 **통장사본**을 징구하고 **신용대출**을 **취급**

* (령 제4조의3① 1호 가목)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통장 사본,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

현역병 대출 취급 가능 여부

구 분	담보대출	신용대출	
		일반	비상금 대출
은행권	가능	불가	가능(300만원 이내)
저축은행 등 2금융권	가능	불가	가능(300만원 이내)
대부업권	가능	가능	가능(100만원* 이내)

* 대부업법령상 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차주는 100만원까지, 30세 이상 69세 이하 차주는 300만원까지 가능

3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

1 **(대부 제한) 대부업권**에 대해서도 **他금융권**과 동일하게 **현역병**에 대한 **일반 신용대출** 취급을 **제한***

* 가족 생계비, 의료비 등 급전수요 충족 및 불법사금융 이탈 방지를 위해 담보대출 및 비상금대출 취급 기준은 현재대로 유지 (他금융권과 동일)

◦ 대부금융협회의 **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***에 **현역병 대상 신용대출**을 **제한**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**업계 자율규제**로 **규율**

* 협회의 업무 범위(법 제18조의3①4호, 령11조의2④6호) :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

2 **(교육 · 홍보 강화) 금융교육***을 통해 **고금리 대부이용** 등에 대한 **경각심**을 **제고**하고, **현역병**이 **이용가능**한 **정책상품** 등에 대한 **홍보** 강화

* 금융위와 함께 '군장병 금융교육 강화방안('26.8월)' 旣마련

4 향후 계획

□ **(대부 제한) 현역병**에 대한 **일반 신용대출**을 **금지**하는 내용을 포함한 **표준업무방법서 제정**을 **연내**에 **완료**하고 **전체 대부(중개)업자***에 **지도**

* 협회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지도하고, 우리원은 각 지자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지도하도록 요청

□ **(교육 강화)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방안***을 지속 추진

* 1:1 재무상담 확대(맞춤형 해결책 제시), 도박·빚투 예방 교육 강화, 전문가 교육 확대 등